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 11. 10 선고 2021가단50107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상

담당변호사 우승원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류호문

피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성진

변 론 종 결 2021. 9. 29.

판 결 선 고 2021. 11.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B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에 2019. 11. 6. 체결된 [별지1] 목록 기재 태양광발전소 및 그 발전사업권(이하 ‘이 사건 발전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양도 및 양수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B 주식회사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발전사업허가에 대한 군산시청에 이행한 이전절차의 취소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 1) 원고는 2017. 10. 10. 철구조물 제작업 등을 하는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와 보증원금을 148,000,000원으로 한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B은 이에 기한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C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으나 2019. 6. 13. 기한이익 상실을 이유로 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원고는 위 신용보증에 기해 2019. 6. 28. C에 149,721,89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 2) 원고는 2019. 8.경 전주지방법원 2019가단22748호로 B을 상대로 위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20. 1. 21. 'B은 원고에게 150,245,327원 및 그 중 149,598,62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0. 2. 19. 확정되었다.

나. B과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

- 1) B은 2019. 5. 13. 피고와 B 소유의 공장건물인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도인 B, 매수인 피고, 매매대금 1,54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 2) 피고는 2019. 5. 29. 이 사건 공장에 관하여 2019. 5. 1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B과 피고 사이의 태양광발전소 및 그 발전사업권에 대한 양도 및 양수계약

B은 2019. 11. 6. 피고와 이 사건 발전사업에 관하여 B이 피고에게 그 발전사업허가를 양도하는

내용의 사업 양도 및 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양수도계약 제5조에는 '이 사건 발전사업 양도 · 양수에 대한 대가 정산은 발전사업허가 변경 후 B와 피고가 실사하여 정산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관련 사건의 진행 경과

1) 원고는 2019. 9.경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가단55857호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는 약의 수익자이므로 취소되어야 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173,377,78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2) 위 법원은 2020. 12. 9.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B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나, ① 피고는 이 사건 공장의 매매대금을 실제로 모두 지급한 점, ② 피고는 이 사건 공장을 인수하면서 이 사건 양수도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B이 이 사건 발전사업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지급하기로 되어 있던 대금을 대신하여 지급하는 등 그 대가를 부담한 점, ③ 피고는 이 사건 공장을 양수하여 실제로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점, ④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이 시세에 비하여 현저히 저렴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거래의 경위가 비정상적이나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공장의 부동산등기부에는 채권최고액 합계 약 1,170,000,000원인 D의 근저당채무와 채권최고액 300,000,000원인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의 근저당채무 외에 B의 별다른 채무관계가 나타나지 않았고, 위 각 근저당채무는 피고가 모두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실제로 대위변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이에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전주지방법원 2021나100호)은 2021. 7. 15.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2021. 8.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

마. B의 무자력

B은 2019. 5. 13. 당시 시가 1,671,550,000원 상당의 이 사건 공장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D, E 등에 대하여 합계 10억 원이 넘는 대출금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었고, 이 사건 양수도계약 당시인 2019. 11. 6.에는 이 사건 발전사업권만이 남아 있었다.

[인정 근거] 갑 제1~4호증, 을 제1~9,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의 성립

가. 피보전채권

원고는 2019. 6. 28. C에 149,721,890원을 대위변제하여 B에 대하여 구상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이는 2019. 11. 6. 이 사건 양수도계약 체결 전에 이미 성립하여 있었으므로,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채무자 B이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발전사업권을 매각하는 이 사건 양수도계약을 체결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포함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B은 이 사건 양수도계약의 체결로 원고 등 일반채권자들을 해하게 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이므로 사해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3. 피고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법률행위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은 수익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72311 판결,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다1196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인정 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더하여 을 제12~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선의 항변은 이유 있고, 결국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

① B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공장 건물 지붕에 이 사건 발전사업의 대상이 된 태양광발전설비(이하 '이 사건 발전설비'라 한다)를 설치하는 공사를 진행 중이었고, 이 사건 발전설비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이 사건 공장 건물을 인수하였던 피고에게는 위 지붕에 설치된 이 사건 발전설비 및 이 사건 발전사업을 실제로 인수할 동기가 충분히 인정된다.

② B은 이 사건 발전설비 설치 공사에 관하여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에게 573,100,000원의 공사대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피고는 2019. 11. 6. 이 사건 양수도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공사대금채무 중 400,000,000원의 채무를 인수하였다. 피고는 2019. 11. 6. F와 공증인가 G법률사무소 증서 2019년 제978호로 위 채무인수금 400,000,000원에 대하여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2020. 11. 9.부터 2020. 12. 31.까지 위 F에 대한 400,000,000원의 채무를 모두 실제로 변제하였다. 또한 피고는 F로부터 일부 공사를 하도급받은 업체인 주식회사 H(63,500,000원 지급)와 I 주식회사(44,750,000원 지급)에게도 그 공사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였다.

③ 피고가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 따라 이 사건 발전사업을 인수하면서 부담한 금액이 이 사건 발전설비에 관한 감정가액(675,000,000원)에 비하여 현저히 저렴한 것으로 볼 만한 수준은 아니며, 당시 이 사건 공장의 소유관계, 이 사건 발전설비에 관한 공사대금 지급현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거래의 경위가 비정상적이거나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④ 관련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 사건 양수도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서도 피고의 사해성 인식 정도를 다르게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인민

[별지1]

별 지(태양광발전소 사업허가)

허가번호 :

상 호 : 기가 태양광발전소

허가권자 : (주)(대표자:)

규 모 : 496.8kw

사업의내용 : 태양광발전사업 및 REC소유권

설치장소 : 전라북도 군산시

- 이 상 -

[별지2]

별 지(부동산목록)

1. 전라북도 군산시 동호
일반철골구조 내화판넬지붕 단층 공장 3200㎡
2. 전라북도 군산시 외 1필지 동호
일반철골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2층 공장
1층 직원식당 325㎡
2층 사무실 325㎡
옥탑1층 계단실 17.14㎡

- 이 상 -

